

# IMO 제26차 총회(A 26) 참석결과 보고

##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26차 총회(Assembly, 26th session)
- 기간/장소 : '09. 11. 23~12. 4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안전제도팀 최기중 선임검사원

## II. 의제목차

1. [의제 8] 전략과 계획
2. [의제 9]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제도
3. [의제 10] 해사안전위원회(MSC) 보고서 및 권고사항의 검토
4. [의제 12]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보고서 및 권고사항의 검토
5. [의제 22] IMO 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 선출

##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8	전략과 계획
------	--------

### 1. IMO의 전략과 계획 (A 26/8, 사무총장)

#### 가. 의제 개요

- 본 문서는 IMO의 전략 계획 및 High-level Action Plan에 따른 IMO의 활동 진행 사항에 대한 이사회 특별작업반의 보고임

- 또한 기구의 전략계획(2010-2015), 상위 행동계획(2010-2011), 전략계획 및 상위 행동계획의 적용지침 및 전 세계통합해운 정보시스템에 관한 총회 결의서에 관한 총회 결의서 채택을 요청함

#### 나. 논의 경과 및 의제내용

- 제25차 총회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의 전략 계획을 담은 제3차 전략 계획에 관한 결의서(Res. A.989(25))가 채택됨
- 제100차 이사회는 Res. A.989(25)와 A.990(25)를 채택하여 성취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특히 High-level Action Plan과 전략을 계획, 작업 프로그램의 구성, 예산 계획, 성과의 모니터링과 결과의 평가 등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적이고 지속적 이도록 하였음
- 제101차 이사회('08. 11.)는 8차 작업반의 결과를 검토하였음. 특히 Res. A.990(25)의 지침을 개발하였음. 작업반은 지침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 지침은 총회에서 결의로 채택 되어야 함. 작업반은 합동점검단(JIU) 권고 중 3가지 요소 특히 국제회의의 비용을 절감 하기 위한 장기 전략(회의의 효율과 효과 증진, 회의 프로그램의 비용 대 효과의 제고, 기구의 고정비용의 절감)에 대해 검토함
- 제102차 이사회('09. 06.)는 9차 작업반 결과를 검토하였음. 특히 High-level Action Plan과

- 전략 계획의 적용에 관한 총회결의 초안과 지침서 초안을 승인함. 또한 사무총장이 제안한 26차 2010~2011기간의 예산요소와 작업 준비를 비롯한 예산 주기 및 기구의 계획의 조정을 고려한 결과 지향적 예산(results-based budget)에 대해 논의하였음
- 10차 작업반('09. 9.)의 결과는 25차 특별 이사회에 제출됨. 이사회는 2010~2011 기간 중 우선순위와 기구의 High-level Action Plan 및 양 계획서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에 대해 총회결의 초안에 관한 현 문서의 추가문서를 총회에 제출할 것임

**다. 회의결과**

- 총회는 IMO의 전략 계획 및 High-level Action Plan에 따른 IMO의 활동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에 주목하고,
- MSC, MEPC, FAL, LEG 및 TCC의 장기 작업계획과 '10~'11년 작업의 우선순위를 승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기구의 전략계획 및 상위 행동계획 등을 포함한 4개의 총회 결의서를 채택함
  - ※ 상위 행동계획에 “8.0.2.7-밀항자 문제해 결을 위한 책임부여에 관한 지침의 개정(결 의서 A.871(20))(FAL 및 MSC)”을 추가함
- (1) 총회 결의서 -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for the six-year period 2010 to 2015)”에 관한 결의서 (Res. A.1011(26))를 채택함
- (2) 총회 결의서 -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the 2010~2011 biennium”에 관한 결의서(Res. A.1012(26))를 채택함
- (3) 총회 결의서 -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Plan

and the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에 관한 결의서 (Res. A.1013(26))를 채택함

- (4) 총회 결의서 - “Gol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에 관한 결의서(Res. A.1029(26))를 채택함

<b>의제 9</b>	<b>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b>
-------------	-------------------------

**가. 의제 개요**

- 제25차 총회('07. 11) 이후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이하 “감사제도”라 함)의 이행 경과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총회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사항임
- 또한 2008~2009년 기간 동안 시행한 9개의 회원국 감사 시 발견사항(Findings)을 포함한 3번째 통합 감사 요약보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MSC 및 MEPC로 하여금 이러한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임
- '07. 2월에 수감한 회원국 감사에서 얻은 일본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나. 논의 경과**

- A 23('03. 11)에서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제도」에 관한 결의서 A.946(23)을 채택함
  - 향후 강제화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지 않고 권고적 성격의 감사제도 시행
- A 24('05. 11)에서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제도를 위한 구성 및 절차」에 관한 결의서 A.974(24)를 채택함
  - 이사회로 하여금 감사제도의 이행을 관리하도록 함
- C 101('08. 11)에서 사무총장으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함

- 규정화에 필요한 예비 작업을 위한 일정 및 감사제도의 규정화를 위한 관련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 C 102(09. 6)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함
  - 감사제도의 규정화를 통한 단계적 도입에 동의
  - 감사제도의 규정화를 위해 강제협약에 포함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
  - 감사제도 강제화를 위한 C 102/6/1에 포함된 강제화 조치계획에 원칙적으로 동의
  - 감사제도의 규정화를 위한 총회 결의서를 준비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

**다. 회의결과**

-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규정화 및 강제화를 위한 다음 결의서를 채택함
  - 총회 결의서 - 「자발적인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계속적 발전」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18(26)
- 일본의 감사 경험에 대해 주목하고, 통합 감사 요약보고서 내용(9개 회원국 감사 정보)을 MSC 및 MEPC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 또한 아직 감사를 받지 않은 회원국은 조속히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자 추천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요청

의제 10	해사안전위원회(MSC) 보고서 및 권고사항의 검토
-------	-----------------------------

**1. 해사안전위원회 보고서 및 권고사항의 검토 (A26/10, 사무총장)**

**가. 의제 개요**

- 2008년 개최된 MSC 84, MSC 85 및 2009년 개최된 MSC 86차 회의 결과에 대한 총회

보고사항임

**나. 회의결과**

- 총회는 선박통항로 관련 일반규정 개정(MSC. Res.280(85) 및 '08. 5. 13 이후 증서 발급되는 특수목적선박에 적용되는 2008 특수목적선 코드(SPS Code)의 승인(MSC. Res.280(85)에 대하여 승인함
- MSC 86에서 승인하고 채택을 요청한 다음 6개의 총회 결의서를 채택함
  - 「Code on Alerts and Indicator, 2009」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21(26)
  - 「2009 MODU Code」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23(26)
  - 「극지방 운항선박 지침」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24(26)
  - 「Survey Guidelines 개정」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20(26)
  - 「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 개정」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19(26)
  - 「해적, 무장강도에 대한 범죄 조사 실무 코드」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25(26)

**2. 소말리아 연안해역의 해적 및 무장강도 관련 사항 (A26/10/1, 사무총장)**

**가. 의제 개요**

- 제25차 특별이사회에서 해적관련 총회 결의서(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관련 정보 제공 문서임

**나. 논의 경과 및 의제내용**

- 제25차 특별이사회에서는 기존 해적관련 총회 결의서인 1002(25)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총회결의서(안)을 검토할 예정임

- 사무총장은 현재 소말리아 연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서인도양에서도 해적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선원의 생명과 안전한 항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강화된 결의서를 채택하고자 결의서(안)을 제안하였음

**다. 회의결과**

- 제25차에서 승인된 서인도양을 포함한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의 무장강도 및 해적행위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서 A.1002(25)를 대체할 총회 결의서 A.1026(26)를 채택하고, 각국에서 이러한 해적에 의한 선원의 생명과 안전한 항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함
  - 「소말리아해역에서의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및 해적행위」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26(26)
  - ※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우리나라 정부 및 관련 업계(한국선급, 선주협회)에서 조성한 기술협력기금 65만 US달러의 기부금에 대한 감사를 상기 결의서에 반영함

**3. 소말리아 연안해역의 해적 및 무장강도 관련 사항 (A26/10/2, 우크라이나)**

**가. 의제 개요**

- 동 문서는 피랍된 선원의 의료적 지원 방안으로 국제 인도주의 관련 기구 및 종교 관련 기구의 연락 명부 유지하고자 하는 제안 문서임

**나. 논의 경과 및 의제내용**

- M/V Faina(우크라이나 소유, 벨리즈 국적)호 및 Ariana(그리스 소유, 말타국적)호의

경우를 보면, 인질로 잡힌 선원들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정보가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됨(Faina호의 경우 러시아 선원 1명이 피랍중 고혈압으로 사망함)

- 피랍된 선박의 선원이 심각한 건강문제가 있을 때는 더 심각해질 수 있음
- 피랍된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음
  - 의사의 승선(피랍한 해적 국가의 국적소유자)
  - 유선상으로 의료지원 상담
  - 선박으로의약품 공급
- 하지만 해적들에 대한 정보부족, 피랍국가 선원이 다국적으로 구성되어 협상에 어려움 등이 있어 이러한 의료적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선원의 의료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적이 출몰하고 있는 지역에 인도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 인도주의 관련 기구 및 종교 관련 기구가 이러한 지원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할 수 있음 (예, 국제적십자사, 세계식량계획기구 등)
- 국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 원조사업등을 통해 지역적 네트워크가 두텁고, 민간인들의 신뢰도가 높아 이들을 활용한 해적들과의 교섭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IMO가 인도적 활동 수행기구의 상세 연락처 목록을 작성 유지해 준다면, 향후 선원 건강 문제 등 동일 사례 발생 시 적의 대응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 회의결과**

- 총회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국제 인도주의 관련 기구 및

종교 관련 기구로부터 나포한 해적의 국적과 같은 국적의 의료지원자를 피랍된 선박에 파견하도록 요청한 우크라이나의 제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 국제 인도주의 관련 기구 및 종교 관련 기구의 연락처 및 의료지원자 명부를 사무국의 이용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사무국이 작성 및 최신화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ICS 등과 같은 관련 기구의 지원을 요청함

#### 4. INTERTANKO와 ITF에 의해 개최된 “2009 젊은 선원 중심 워크숍”(A26/INF.4, ITF & INTERTANKO)

##### 가. 의제 개요

- 2009년 7개국의 20명의 젊은 선원들(갑판사관, 기관사관, 부원, 실습사관등 이중 3명은 여성이었음)이 3일 동안 워크숍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 경력, 선상 생활의 매력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

##### 나. 논의 경과

- 3일 동안 워크숍을 시행했으며 첫날은 젊은 선원들 자체적으로 토론을 했으며, 둘째날은 IMO, INTERTANKO, INTERCARGO, INTERMANAGER와 ITF 등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셋째날은 IMO 사무총장과의 면담이었음

##### 다. 회의결과

- 총회는 노동근로조건이 열악한 승선 근무 환경에 더하여 외국 기항지에서 ISPS Code 등의 적용에 따라 상륙이 불허되는 등 젊은 선원들이 승선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 등에 주목하고,

- 더 많은 젊은 선원들이 승선업무를 포함한 해사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각국이 MSC 및 관련 전문위원회(STW 등)에 제출하도록 요청함

의제 12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보고서 및 권고사항의 검토
-------	--------------------------------

##### 가. 의제 개요

- 본 문서는 지난 25차 총회 이후 개최된 제57차, 제58차, 제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고, 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임

##### 나. 의제 내용

- 총회의 검토가 필요한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결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함

##### (1) 강제 협약의 개정사항 채택

결 의 서	관련 조항	내 용 (개 요)
Res. MEPC.176(58)	부속서 VI 개정	전면개정(발효 : 2010. 07. 01)
Res. MEPC.177(58)	NOx Technical Code 2008	NOx Technical Code 전면개정(발효 : 2010. 07. 01)
Res. MEPC.186(59)	부속서 I 개정	신규 제8장 추가 및 IOPP증서 추록 B 부분개정(발효 : 2011. 01. 01)
Res. MEPC.187(59)	부속서 I 개정	제1, 12, 13, 17, 38규칙 및 IOPP증서와 기름기록부 개정(발효 : 2011. 01. 01)부속서 I 개정

(2)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

•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의 감소

(ㄱ)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배출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회기간 작업반이 아래와 같이 개최됨

- 제1차 회기간 작업반: 2008년 6월 23~27일, 노르웨이 오슬로

- 제2차 회기간 작업반: 2009년 3월 9일~13일, 영국 런던 IMO 본부

(ㄴ) MEPC 58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Global Levy와 관련하여 중국, 브라질, 인도 및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주요 개도국은 UNFCCC 및 교토의정서상에 명기된 원칙 CBDP(Common But Differentiated Principle)을 근거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아국을 포함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들은 IMO 상의 다른 규정들이 모든 선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논리로 반박

- 시장기반 저감방식과 관련하여 GHG 작업반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겨졌으며, 본회의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근거가 상충됨에 따라 차기 MEPC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ㄷ) MEPC 59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다음의 선박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지침들을 승인함

- 회원국들은 시장기반조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계획(work plan)에 동의함

- ① MEPC 60은 국제해운부문에 대한 시장기반조치 도입의 타당성 연구와 파급효과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요건에

Circular	내 용
MEPC.1/Circ.681	신조선의 EEDI 계산방법에 대한 잠정 지침서
MEPC.1/Circ.682	EEDI의 자발적 검증(2단계 : 설계단계에서 예비 검증 - 해상 시운전 시 최종 검증)을 위한 잠정지침서
MEPC.1/Circ.683	선박 에너지효율 관리계획서(SEEMP) 개발을 위한 지침서
MEPC.1/Circ.684	선박 에너지효율 운항지수(EEOI)의 자발적 이용을 위한 지침서

대해 검토할 것이며, 특히 개도국의 해운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임

② 상기 .1 항에서 언급된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시장기반조치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를 MEPC 61에서 명확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임

③ 상기 .2 항에서 언급된 결과를 토대로, MEPC 62에서는 시장기반조치와 관련된 진척사항을 제27차 총회에 보고할 수 있을 것임

- 국제 해운에 적용되는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규제 관련 제도는 IMO에 의해 개발되고 채택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함

• MARPOL 부속서 VI 관련 사항

(ㄱ) MEPC 57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MARPOL 부속서 VI 및 NOx Technical Code에 대한 개정 초안을 승인함

- 황산화물 세정장치를 위한 지침서로 채택된 바 있는 Res.MEPC.130(53)을 개정하여 Res.MEPC.170(57)을 새로 채택함

- MARPOL 부속서 VI의 연료유의 황함유량 검증 절차에 대한 통일해석인 MEPC.1/Circ.614를 승인함

(ㄴ) MEPC 58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MARPOL 부속서 VI 및 NOx Technical Code에 대한 개정안 채택

-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 및 NOx Technical Code의 효과적인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의 Circular에 대하여 승인함

Circular	내 용
MEPC.1/Circ.637	연료유의 유효성 및 품질
MEPC.1/Circ.638	NOx Technical Code 2008의 적용 관련 임시 지침서

- (ㄷ) MEPC 59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미국과 캐나다 연안으로부터 200n.mile 까지를 NOx · SOx · PM 배출통제해역으로 지정하지는 제안(관련문서 : MEPC 59/6 /5)이 이번 회기에 승인되었으며 차기 MEPC 60차에 MARPOL Annex VI의 개정 결의서로 채택 예정
  -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 및 NOx Technical Code의 효과적인 이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아래의 결의서를 채택함

결의서	내 용
Res.MEPC.180(59)	개정된 MARPOL Annex VI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의 조화제도(HSSC) 개정
Res.MEPC.181(59)	개정된 MARPOL Annex VI에 따른 항만국통제 지침서
Res.MEPC.182(59)	개정된 MARPOL Annex VI에 따른 연료유 샘플링 지침서
Res.MEPC.183(59)	선박용으로 공급되는 잔류 연료유의 세계적인 평균 유황 함유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지침 (2009)
Res.MEPC.184(59)	황산화물 세정장치 성능기준 지침서
Res.MEPC.185(59)	VOC 관리계획서 개발을 위한 지침서

- MEPC 59에서 승인된 주요 MEPC Circular

Circular	내 용
MEPC.1/Circ.678	개정된 MARPOL 부속서 VI의 13.7.5 규칙의 비용 효과 공식(cost effectiveness formula)에 대한 정의
MEPC.1/Circ.679	Tier I 엔진의 증서 발급 및 개정과 관련한 NOx 코드에 대한 지침
MEPC.1/Circ.680	VOC 관리계획서 개발을 돕기 위한 시스템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정보

- (3) 선박 평형수에 포함된 수중유해물질
  - MEPC 57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ㄱ) “Res.MEPC.126(53) -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밸러스트수 처리장치의 승인을 위한 절차(G9)” 를 개정한 Res.MEPC.169(57)을 채택함
    - (ㄴ) 평형수 처리장치의 승인

승 인	장 치
기본승인	ClearBallast System (일본)
	Resource Ballast Technologies System(남아공)
	GloEn-Patrol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대한민국)
	OceanSaver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노르웨이)
최종승인	SENDA OCEAN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using PER-ACLEAN)(독일)

- MEPC 58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ㄱ) MEPC 58에서 채택된 주요 MEPC 결의서

결의서	내 용
Res.MEPC.173(58)	평형수 샘플링을 위한 지침서 (G2)
Res.MEPC.174(58)	평형수 관리 시스템의 형식승인을 위한 지침서 (G8)
Res.MEPC.175(58)	형식승인 완료된 평형수 처리장치의 정보 보고

(ㄴ) 평형수 처리장치의 승인

승 인	장 치
기본승인	TG Ballastcleaner, TG Environmental guard System(일본)
	Green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네덜란드)
	Ecochlor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독일)
최종승인	Electro-Cleen System(대한민국)
	Ocean Saver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노르웨이)

- MEPC 59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 MEPC 59에서 승인된 주요 Circular

Circular	내 용
BWM.2/ Circ.19	BWM 협약의 B-3.1규칙에 포함된 적용일예 대한 명확화
BWM.2/ Circ.20	평형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의 안전한 취급 및 저장을 보장하고, 처리 과정으로부터 기인하는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위험을 위한 안전 절차의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안내서
BWM.2/ Circ.21	평형수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질의서 (engineering questionnaire)

(ㄴ) 평형수 처리장치의 승인

승 인	장 치
기본승인	Blue Ocean Shield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중국)
	The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HHI)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EcoBallast) (대한민국)
	AquaTriCombTM 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독일)
최종승인	RWO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CleanBallast)(독일)
	NK-O3 BlueBallast System (Ozone) (대한민국)
	Hitachi Ballast Water Purification System (ClearBallast) (일본)
	Greenship Sedinox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네덜란드)

(4) 선박 유해 방오 시스템

- MEPC 59는 런던협약과 의정서에 의해 개발된 “TBT 선체도료를 포함한 선박의 방오 코팅 제거에 대한 모범관리사례 지침서”에 대한 회람인 AFS.3/Circ.3을 승인함

(5) 선박재활용

- MEPC 57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당사국의 선박이 비당사국의 시설에서 재활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MEPC 57은 협약상에 당사국 대 당사국 조항만 유지하기로 함
- MEPC 58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선박재활용 협약 초안을 승인함. 동 협약 초안은 2009년 5월에 홍콩에서 개최될 외교회의에서 채택 예정임
- MEPC 59에서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 2009년 5월 홍콩 외교회의에서 선박재활용 협약이 채택된 사실에 주목함
  - (ㄴ) MEPC 59에서 채택된 선박 재활용 관련 MEPC 결의서

결의서	내 용
Res.MEPC.178(59)	선박재활용 협약의 발효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선박재활용 용량의 계산 방법
Res.MEPC.179(59)	유해물질목록(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개발을 위한 지침서

(6) 특별해역과 특별민감해역 (PSSAs)

- MEPC 57은 Papahanaumokuakea Marine National Monument를 특별민감해역(PSSA) 으로 지정함
- MARPOL 부속서 V에 따른 특별해역에서의 배출 제한요건과 관련하여 MEPC 57은 지중해 지역에서의 동 배출 제한 요건을 2009년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7) MARPOL에 대한 해석 및 개정

- MEPC 57에서 승인된 통일해석



- MARPOL 부속서 I의 1.28 및 1.30규칙과 MARPOL 부속서 IV의 1.1규칙의 용어 “동등한 건조 단계(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에 대한 통일 해석
- MARPOL 부속서 I의 22규칙의 “펌프룸 바닥 보호(pump-room bottom protection)”에 대한 통일 해석
- MEPC 58에서 승인된 통일해석
  - MARPOL 부속서 I의 12A규칙의 “연료 유탱크 보호(oil fuel tank protection)”에 대한 통일해석
  - MARPOL 부속서 I의 23규칙의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비율(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에 대한 통일해석
- MEPC 59에서의 승인 사항
  - MARPOL 부속서 I의 23규칙의 “사고로 인한 가상 기름유출비율(accidental oil outflow performance)”에 대한 개정된 통일해석
  - MARPOL 부속서 I의 12A규칙의 “연료 유탱크 보호(oil fuel tank protection)”에 대한 명료화
  - 부속서 I의 15규칙 및 결의서 MEPC.139(53)의 고정식·부유식 플랫폼에서 기름 및 유성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정 명료화
  - MEPC.1/Circ.675: MARPOL 부속서 V 상 걸프해역과 지중해에서 화물창 세정수의 임시적인 배출기준
  - MEPC.1/Circ.676: 기관구역의 유성잔류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수정 지침의 2008 개정
  - MSC-MEPC.5/Circ.5: 거리의 측정 (Measurements of distance) - SOLAS, MARPOL, ICLL 및 기타 강제규정 관련하여 내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판과 외판 사이의 거리는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 하는 한 형선(moulded line)으로 측정해야 함
- (8) OPRC 협약과 OPRC-HNS 프로토콜의 적용
  - MEPC 57은 새로 개발 및 수정된 OPRC 관련 모델 코스의 검증을 위한 평가 지침의 최종본을 승인함
  - MEPC 59는 HNS 오염에 대한 계획 및 대응에 대한 두 개의 기본 IMO 모델 코스와 OPRC Train-the-Trainer 코스의 훈련 자료들을 승인함
- (9) 전문위원회 보고
  -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중요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정리함
- (10)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협력 하부 계획
  - 위원회는 사무국에 의해 수행되었던 훈련 코스, 세미나, 워크숍 등 해양환경보호관련 기술협력 활동들에 대하여 주목하였음
  - MEPC 59는 다음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기술협력 활동들에 대하여 주목하였음
    - ITCP: 특히 MARPOL, OPRC, BWM 및 AFS 협약 관련
    - GEF-UNDP-IMO 프로젝트: 개발도상국이 선박의 평형수의 유해 수중 생물의 이송을 줄일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
    - PEMSEA - Phase II: 동아시아 해역의 환경보호 및 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 GEF/IBRD/IMO의 말라카 해협 및 싱가포르에서의 Regional Marine Electronic Highway(MEH) Demonstration Project
    - 해상 안전 및 선박 오염 방지에 대한 EUROMED 협력에 대한 프로젝트 (SAFEMED II)

(11) 인적 요인의 역할

- MEPC 58은 다음에 대하여 승인함
  - MSC-MEPC.7/Circ.7: Near-miss 보고에 대한 지침
  - MSC-MEPC.7/Circ.4의 부속서의 부록 : 인적 요인을 고려한 IMO의 전략에 대한 최신 조치 계획
- MEPC 59은 인적요인에 대한 MSC/MEPC 합동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동 작업반의 보고서에 대하여 승인함. 특히, 아래와 같은 승인/동의 사항이 있었음
  - ISM Code의 주관청 이행 관련 지침서 (결의서 A.913(22))에 대한 개정 초안 승인
  - IMO와 ILO의 두 기구의 공동 이해관계 관련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IMO/ILO 합동 특별 작업반의 구성 제안에 대하여 동의함
  - 선원안전 대리인 (Seafarer Safety Representative)의 훈련 요건을 다루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기로 동의하였으며 MSC- MEPC.7 Circular로 발행하기로 함

(12) 공식 안전성 평가 (FSA)

- MEPC 59은 환경 위험성 평가 기준에 대한 작업반을 MEPC 60에서 구성하기로 동의하였고, 작업반의 업무 원조용 기본 문서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 통신작업반을 재구성하기로 동의함

(13) 위원회 지침의 적용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지침(the Guidelines on the organization and method of work of the MSC and MEPC and their subsidiary bodies)”의 개정안에 대하여 승인

다. 회의결과

- 선박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한

MEPC의 활동사항을 포함한 지난 제25차 총회 이후 개최된 제57차, 제58차, 제59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결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주목하고,

- 「해사주관청에 의한 국제안전관리코드(ISM Code)의 이행 지침」에 관한 총회 결의서 A.1022(26)를 채택함
  - ※ 적용일자: '10. 7. 1부터 상기 채택된 이행 지침을 적용함

의제 22	IMO 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 선출
-------	----------------------------------

1. IMO 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 선출 (A 26/22, A 26/22/1, A 26/ 22/1/Add.1, 사무총장)

가. 의제 개요

- 총회는 IMO 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하여야 하며, 상기 문서는 이사국 선출을 위한 규정 및 IMO 회원국의 총톤수에 따른 상선 선복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2009년 10월까지의 이사회 입후보 현황에 대한 내용임

나. 의제 내용

- IMO 협약 제16조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4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IMO 협약 제17조 - 이사국의 구성

이사국	구성 내용
A그룹 이사국	국제 해운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0개국
B그룹 이사국	국제 해상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0개국
C그룹 이사국	A그룹 및 B그룹을 제외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해상운송이나 항해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는 20개국

- '08. 12. 31 현재, IMO 회원국의 상선 선복량(총톤수)에 대한 정보가 부속서로 제공됨. (출처 : 로이드 연감) 파나마가 183,503,499톤으로 1위, 라이베리아가 82,389,489톤으로 2위이며, 우리나라는 14,144,727톤으로 독일에 이어 세계 13위(2006년 16위)의 선복량을 보유함. 일본은 13,536,370톤으로 15위임
- IMO협약 제17조에 따른 이사회 출마국 현황('09. 10. 30 기준)
  - (1) A그룹 이사국(출마 11개국/10개국) - 중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대한민국, 파나마, 영국, 미국, 러시아, 라이베리아
  - (2) B그룹 이사국(출마 10개국/10개국) -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 (3) C그룹 이사국(출마 26개국/30개국) - 호주, 바하마, 벨기에, 칠레, 쿡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덴마크,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자메이카, 케냐,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말타, 마셜아일랜드,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UAE
- A그룹 이사국으로 출마하는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복량과 IMO에 2번째로 많은 기부금(2009년 미화 2.2만 달러)을 내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임을 내세우고 있음

[이사국 선출 방법]

- ◎ 매 2년마다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결정함. (A, B 및 C그룹 이사국별 순차적 투표 실시)

- ◎ 투표 회원국의 과반수 이상 획득 국가 중 다득표순 선출

나. 회의결과

- A그룹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중국과 함께 제2순위로 A그룹 이사국에 당선됨
  - ※ 우리나라는 153개국 중 138표를 얻어 당선됨. 라이베리아는 101표를 득표하여 낙선함
- B그룹 이사국은 10개국이 지원함으로써 경합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
- C그룹 이사국은 26개국이 지원함으로써 경합이 발생하여 투표에 의해 이사국을 선출
  - ※ 제25차 총회 이후 C그룹 이사국이던 뉴질랜드는 연임 지원하지 않았고, 추가로 벨기에가 C그룹 이사국에 당선됨
- 이번 제26차 총회에서는 IMO 협약 40bis에 “전자개표(Electronic counting of vote)” 방법으로 신속하게 개표를 진행함
- 제26차 이후 이사회 회원국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이사국	구성 내용
A 카테고리 이사국(10개국)	대한민국, 중국,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파나마, 영국, 미국, 러시아
B 카테고리 이사국(10개국)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캐나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C 카테고리 이사국(20개국)	호주, 바하마, 벨기에, 칠레, 사이프러스, 덴마크, 이집트,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케냐,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공, 태국, 터키